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동 개정조례안은 2003. 2. 27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하여, 2003. 3.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의 학생 수련·교육의 원활한 수행과 각 지방에 산재되어 있는 분원 및 야외교육장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원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舊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소재지)로 이전하고,
- 새로운 교육과정의 도입에 따른 생활중심 수련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학생교육분원”의 명칭을 “생활체험의 집”으로 변경하여 그 소재지를 경기도 가평군(현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본원 소재지)으로 이전하며,
- 일부 본원 및 야외교육장의 명칭과 소재지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본원 소재지를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산 106번지 1호”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번지 27호”로 변경
-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여학생교육분원”의 명칭을 “생활체험의 집”으로 변경하고, 그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45”에서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487-1”로 변경
- 서울특별시 학생교육원 일부 분원의 명칭 변경
  - 대성의 집 분원 → 대성의 집
  - 대천임해수련분원 → 대천임해수련원

4.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의 학생 수련·교육의 원활한 수행과 각 지방에 산재되어 있는 분원 및 야외교육장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원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舊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소재지)로 이전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의 도입에 따른 생활중심 수련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학생교육원분원”의 명칭을 “생활체험의 집”으로 변경하여 그 소재지를 경기도 가평군(현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본원 소재지)으로 이전하며, 일부 본원 및 야외교육장의 명칭과 소재지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제안됨.
- 여학생교육원 분원은 1984년부터 현재의 송파구 장지동에 소재하는 한국어린이육영회의 건물일부를 임차하여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생활체험이나 식사예절, 가정생활 등의 내용을 가지고 3박4일과정으로 편성하여 1기당 430명 가량의 교육생을 배출해오고 있음.  
(전년도 교육실적 총11,498명)  
※ 여학생교육원 임차료는 2001년까지는 무료로 사용하고 2002년부터는 유료로 전환하였으며, 연간 임차료는 약2억4천만원임.
- 동 교육원은 원장1인을 포함하여 총 13명 정원(시간강사 등 4명은 별도)에 금년도 예산액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약 9억3천만원임.
- 동 교육원은 임차계약 만료로 전년도 12월31일까지 이전기로 하였으나, 이전기로 한 종로구 사직동 소재 舊교육연수원 건물 리모델링 사업이 인접한 매동초등학교 운동장부지와 중첩관계로 학부모로부터 이전반대 청원이 제기되어 이전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현재의 학생교육원 본원이 있는 가평으로 이전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여짐.
-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 교육원의 존치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양성평등의 교육이념을 실천한다는 취지에서 최근 3년전부터 남학생도 대상으로 혼합반을 편성하여 교육을 해왔고, 이번에 이를 반영하여 여학생교육원의

명칭도 “생활체협의 집”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조치는 양성평등의 이념을 지향하는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는 적절한 교육기능의 변경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이번에 여학생교육원이 가평본원으로 이전케 됨에 따라 현재 가평본원에서 실시중인 지도자 중심의 교육(2박3일 또는 3박4일 과정 176명 수용)과정은 7월31일부로 폐지되고 가평본원도 종로구 사직동에 소재하는 舊교육연수원 자리로 이전케 됨.
- 통상 교육원 본원은 주된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곳에 소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서울시 교육청 소관 학생교육기관은 본원을 포함하여 3개 본원과 4개 야외교육장 모두 경기도 일원에 분산되어 있어, 총괄 및 기획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는 본원의 위치는 서울시교육청 인근에 소재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봄.
- 다만, 이번 여학생교육원과 본원의 이전은 적절한 공간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감이 없지 않은 바, 향후 적절히 분산된 교육시설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시설별 특성화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교육시스템의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짐.
- 그밖의 “분원”의 명칭을 삭제하는 부분이라든지 교육원 소재지의 주소가 변경된 것은 지목변경 등 행정절차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중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산106번지 1호”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번지 27호”로 한다.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학생교육원 분원 및 야외교육장의 명칭·위치(제20조 관련)

구 분	분원 및 야외교육장명	소 재 지	비 고
분 원	생활체협의집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487-1	
	대성의집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대성리 585	
	대천임해수련원	충청남도 보령시 신후동 2055	
야외교육장	모현야영수련장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일산리 산25-1	
	퇴촌야영수련장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산279-4	
	천마의집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1-1	
	축령산야영수련장	경기도 가평군 상면 행현리 13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분원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